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6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19.

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2016. 3.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6. 3. 30. 접수 제105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2016. 1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6. 11. 11. 접수 제54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1,942,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942,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약사법 위반행위 및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이다.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8. 2. 13. B이 약사가 아님에도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약을 조제·판매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합55호, 이하 '선형 형사 판결'이라 한다). 선형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D은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함)의 병원장, 피고인 B은 D의 모친이자 E병원 이사, F(2007. 12. 21. 사망)은 피고인 D의 부친이자 E병원 이사장으로서, 2000. 7. 1.경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협의하고, E병원 자재과장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G이 E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H(2016. 12. 24. 사망)을 개설약사로 섭외하자, E병원 앞에 H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F은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H을 비롯하여 E병원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I 등 5명을 E병원 인근에 마련한 가건물로 근무지만 옮겨서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00. 8. 2. E병원 원무과장 J으로 하여금 H 명의로 'K약국'2)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00. 8. 23. 사위인 L 명의로 E병원 입구 쪽 강릉시 M 토지를 구입한 다음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0. 11. 21. 위 건물 1층에서 C약국이 영업하도록 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 G을 통하여 C약국을 관리하고 C약국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여 왔고, F이 사망한 2007. 12.경 이후로는 피고인 D은 E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E병원 상임이사로서 C약국의 실운영자 지위를 F으로부터 승계 받아 E병원과 함께 C약국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G은 C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C약국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H은 명의만 개설약사로 한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C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며 C약국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의 약사 명의를 빌려 C약국을 운영하던 중 H이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C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N 명의로 C약국을 개설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으로 하여금 H 명의 C약국 폐업 신고와 동시에 피고인 N 명의로 C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E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주)Q 대표인 피고인 O은 피고인 N으로부터 약국 개설·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약국의 실운영자가 피고인 D,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병원과 C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주)Q 직원인 피고인 P를 C약국으로 보내 피고인 N 명의로 C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은 C약국의 실운영자로서 C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은 아무런 초기 투자비용 없이 본인 명의로 개설등록만 하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C약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P는 의약품 구입, 재정 관리, 전산 업무 등의 업무를 맡으며 C약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O은 피고인 P로부터 C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P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C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0. 10. 7.경까지 강릉시 M에 있는 C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믿은 원고로부터 2008. 12. 24.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1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713,202,890원을 피고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3,713,202,8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R,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의 공동범행(2010. 10. 8.부터 2016. 9.경까지)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P, N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약국을

운영하던 중 N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약국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자, C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R 명의로 C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으로 하여금 N 명의 C약국 폐업 신고와 동시에 피고인 R 명의로 C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E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피고인 S을 통하여 C약국 시설 및 인력의 관리, 약품 구입·비치, 영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면서 C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P, 피고인 G으로부터 C약국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C약국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R은 아무런 초기 투자비용 없이 N으로부터 개설약사 명의를 이전받은 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C약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P는 의약품 구입, 거래처 대금 결제, C약국 재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C약국을 관리함과 동시에 C약국 재정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C약국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O은 피고인 P로부터 C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피고인 P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C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S은 C약국 시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직원 채용, 약품 구입·비치 등에 관한 피고인 D의 지시사항 및 의약품 재고 관리에 관한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0. 10. 8.경부터 2016. 9.경까지 강릉시 M에 있는 C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8.부터 2016. 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믿은 원고로부터 2010. 11. 24.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9회에 걸쳐 합계 13,071,970,950원을 피고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3,071,970,950원을 교부받았다.

3) B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35호로 선행 형사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18. 7. 25.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대법원 2018도1307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29.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선행 형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3. 29. 손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1, 2, 3, 5 부동산을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6. 3. 30. 접수 제10532호로 이 사건 1, 2, 3,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4 부동산을 증여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6. 11. 11. 접수 제54120호로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개별 증여계약을 지칭하는 경우 증여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등

원고는 2017. 8. 3. B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C약국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4,361,174,98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7. 9. 6. B에게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에 따라 C약국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1,305,964,520원을 추가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B에 대하여 25,100,401,091원의 환수금 등 채권을 가지는 사실 및 위 채권 중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C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환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진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환수금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재산 정리의 일환으로 유일한 친손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고, B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은 C약국 개설 초기 약사와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F이 사망한 2007. 12.경 이후 D과 함께 C약국의 실운영자 지위를 승계받아 C약국의 수익, 지출, 재고 등을 관리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 꾸준히 C약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B은 F 사망 후 의료법인 E병원의 대표이사가 되어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장기간 의료계에서 활동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사무장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과 관련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약국 운영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할 수 있고, 보유한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15. 1. 2.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게 춘천시 약사회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신고한 5개
약국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원고는 위 수사 의뢰 대상에 C약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C약국에 대하여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2. 12. 원고에게 '원고가 수사를 의뢰한 원주대형약국에 대한 수사 중
C약국이 사무장약국 의심약국으로 확인되었으니, 혐의사실 확인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19.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1, 2, 3, 5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강원도 관내의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C약국이 사무장약국이라는 단서가 포착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1, 2, 3, 5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C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6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7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B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약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강릉시는 2020. 6. 3. '2020. 6. 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5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5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5 부동산의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5 부동산의 가액은 11,942,800원(= 163,600원/㎡ × 7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5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11,942,8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5) 결국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다만, 이 사건 5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942,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B에게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2016. 3. 30.

접수 제1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6. 11. 11. 접수 제54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5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인 11,9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수영

판사정지원

판사황정현

별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2) 2000. 11. 1. K약국의 상호가 'C약국'으로 변경됨